

| | |
|------|-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사회복지과-26224 |
| 등록일자 | 2015.7.17. |
| 결재일자 | 2015.7.17. |
| 공개구분 | 대시민공개 |

| | | | | |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주무관 | 생활보장팀장 | 사회복지과장 | 복지환경국장 | 부구청장 | |
| 이정역 | 김인배 | 김화전 | 유용렬 | 07/17 황치영 | |
| 협 | 방문보건팀장 | 이화선 | 복지지원과장 | 조충현 | |
| | 건강관리과장 | 신용준 | | | |
| 조 | 통합조사팀장 | 정채수 | | | |
| | 맞춤지원팀장 | 김현성 | | | |

맞춤형복지급여 수급대상자 발굴 계획



복지환경국
사회복지과

요 약 지

○ 추진 근거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

○ 시행일자 : 2015. 7. 1

○ 추진배경

-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정책 환경 변화
-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실시로 수급자격 기준 완화

○ 발굴 추진계획

- ▷ 맞춤형복지급여 TF 재편
- ▷ 가용자원 총동원 및 발굴가능자 명단 최대한 활용
- ▷ 신청자 접수 절차 완화
- ▷ 신청 탈락자에 대한 연계·지원
- ▷ 동별 대상자 자율목표제 설정

○ 기대효과

- ▷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대상자 발굴을 통하여, 복지 사각지대 주민의 자립강화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토대 마련

맞춤형복지급여 수급대상자 발굴 계획

2015. 7. 1부터 수급자격 완화로 맞춤형복지 급여지원제도가 확대되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수급대상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에게 자립강화 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토대를 마련코자함.

I 추진 개요

1. 추진근거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2. 시행일자 : 2015. 7. 1.

3. 추진배경

-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(2000년) 이후 정책 환경변화
 - 근로빈곤층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근로능력자의 자립역량 강화필요
 - 정책수혜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 필요
 -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사회적 관점 변화
-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실시로 수급자격 기준 완화

4. 기대효과

-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복지급여 수급대상자 발굴을 통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

II 현 황

1. 맞춤형급여 대상자 신청 현황

(2015. 7. 8 기준)

| 구 분 | 발굴 목표인원 | | 신청실적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|
| | 기 존 | 확 대 | | |
| 맞춤형급여대상 | 514가구 | 1,213명 | 416명 | 34% |

2. 맞춤형급여대상자 선정기준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비 고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생계급여 | 437,454 | 744,855 | 963,582 | 1,182,309 | 1,401,037 | |
| 의료급여 | 624,935 | 1,064,078 | 1,376,546 | 1,689,013 | 2,001,481 | |
| 주거급여 | 671,805 | 1,143,884 | 1,479,787 | 1,815,689 | 2,151,592 | |
| 교육급여 | 781,169 | 1,330,098 | 1,720,682 | 2,111,267 | 2,051,851 | |

3. 선정기준 내용

-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 - 중증장애인 가구는더 완화된 기준 적용
 -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폐지
- 주거급여는임대료 수준을 고려

4. 실적 저조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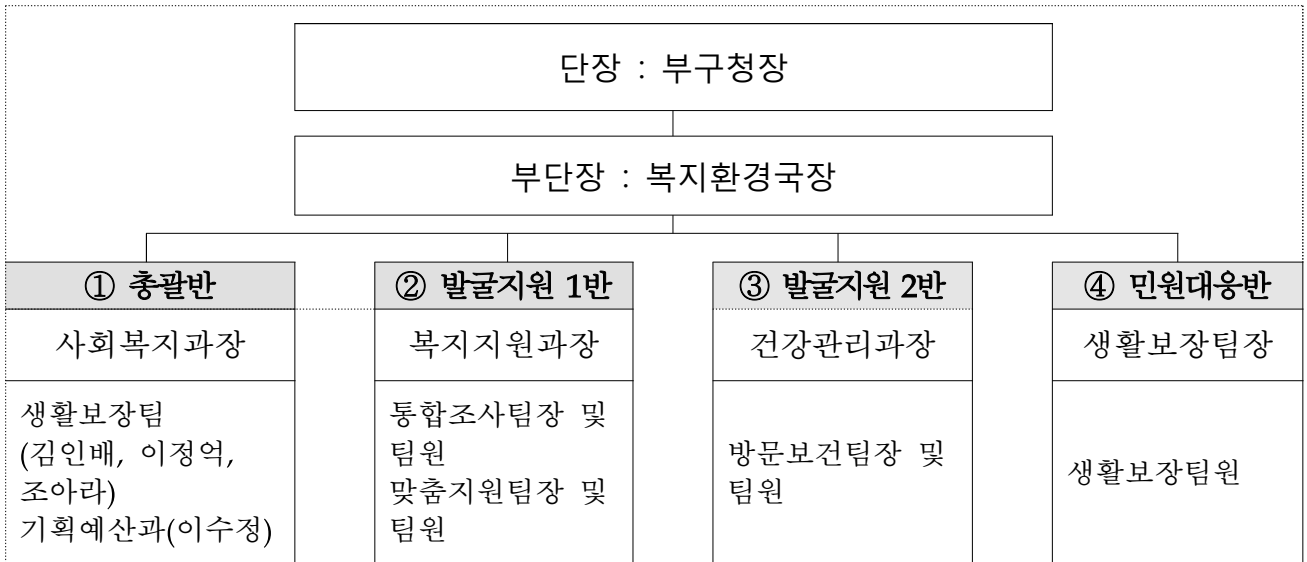
- 내방, 유선 상담후 서류완비까지 장시간(통상 2~4주) 소요
- 메르스로 인한 홍보효과 저조 및 동주민센터 내방민원 감소
- 집중 신청기간에는 통합급여 신청만 접수(개별급여신청 7.1이후 가능)

Ⅲ

세부 추진계획

1. 맞춤형복지급여 TF 재편

- 운영기간 : '15. 7월 ~ 상황 종료시
- 재편 내용
 - TF 단장 격상 : 부구청장
 - 부단장 신설 : 복지환경국장
 - TF 주요 역할 : 수급대상자 발굴
- 중구 맞춤형 복지급여 TF 구성



○ 각 반별 역할

- **(총괄반)** TF구성 및 준비계획 수립, 상황관리체계 유지, 복지공무원 재배치 및 주거급여 전담부서 등 인프라 구축, 예산확보, 조례 정비, 법령·지침 관련 총괄, (기타) 제도시행 준비사항 점검 등
- **(발굴지원 1반)** 수급자 전환계획, 전산시스템 운영 및 자료정비, 수급대상자 발굴 및 자원관리 등
- **(발굴지원 2반)**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수급대상자 발굴
- **(민원대응반)** 각종 민원대응, 사건사례 전파 및 보고, 현장점검 등

2. 수급대상자 발굴추진 방법

○ 동별 가용자원 총 동원

- 통담당 직원 및 맞춤형급여 보조인력 : 기존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등 발굴가능 대상자에게 신청·접수 독려
- 통장·반장, 각종 직능단체, 지역 복지시설, 종교단체, 여성단체 등 : 복지 사각지대 발굴책임제 운영

○ 발굴가능자 명단을 최대한 활용

- 복지지원과
 - 희망복지지원단 및 긴급복지지원 대상자, 후원금 대상자
 - 드림하티 후원금 수혜자(차상위계층, 일반저소득층)
 -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 저소득 주민
- 사회복지과
 -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
 - 경로당 등 이용 저소득 주민
- 건강관리과 : 방문간호 대상자 및 주변 저소득 주민
 - * 필요시 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의 구비서류 방문 접수 후 해당 동 전달
- 동 주민센터
 - 최근 5년 이내 보장종지 및 신청탈락자
 - 4대 차상위 지원사업·저소득한부모가정 중 가능대상자
 - 기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

3. 동별 대상자 발굴 자율목표제 시행

- 동별 신규 신청·접수 목표 가구원수 배정(총1,213명) : 별첨
 - 동에서는 7월말까지 목표 가구원수 달성 노력
-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대상자 적극 발굴

4. 신청자 접수 절차 완화

-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초기상담 후 보장결정 불가예상을 이유로 임의적 신청반려 자제
 - 보장결정 제외 가능성과 향후 기준변경 및 각종 차상위 지원사업 연계 등으로 다른 도움 가능성을 함께 안내
- 신청 후 구비서류(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) 미완비를 이유로 접수보류 자제

4. 신청탈락자에 대한 연계·지원

- 신청접수 상담시 보장결정 제외 가능성과 향후 기준변경 및 각종 차상위 지원사업 연계 등으로 다른 도움 가능성을 함께 안내
- 긴급 복지지원, 차상위지원사업, 자활고용지원 등 공적지원 우선 연계
- 희망복지지원단, 동 민관협의체 등 지역 내 민간지원사업 적극 연계

IV 행정사항

- 동 주민센터 : 동별 대상자 발굴 목표 참고하여 신청가능자 개별 안내
- 해당 부서 및 동 주민센터 : 각종 회의 시 자료 홍보
- 방문간호사, 더함복지사, 맞춤형급여 인력 관리부서 : 해당 직원들에게 내용 안내 및 발굴 안내 교육실시